

	직원인사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31
		제정일자	2012.03.01.
		개정일자	2012.09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되며,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.

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에 관한 사항

2. 직원의 전직, 전보에 관한 사항

3. 직원의 강임, 유직, 직위해제, 휴직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에 관한 사항

제6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